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3.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가농기계의 구입이 어려운 영세 소농중심의 농가작목반 등에서 공동이용함으로써 농기계의 구입부담경감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사항의 규정(안 제5조)
- 임대농기계의 임대기준 및 기간설정(안 제8조)
-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부과 및 징수기준설정(안 제9조)
-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기준 설정(안 제14조)

3. 조례 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제4조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구미시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구미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여한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라 함은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구미시로부터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구미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한다.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농기계교관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기계사용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 입회하에 다음 각호를 수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1.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사용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③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9조(임대대상농기계와 임대료) ① 임대대상 농기계 및 임대료는 구입 가격,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별표] 와 같다.

② 제7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임대료를 [별표]의 농기계임대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임대수입금) 시장은 농기계 임대 수입금을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농기계의 내구연한 경과 후 재구입 및 신규 농기계 확보
2. 농기계의 유지보수

제11조(임대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 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액면제 : 재해·재난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전액 반환

가. 농기계의 출고전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다만, 출고
후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 기간중 반납한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
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
과 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나 관리임무를 태만
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
상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 · 물적 피해 등
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5조(농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3회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3회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농기계 사용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7조(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1. 농기계 사용 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및 「구미시세 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농기계임대료징수기준

(단위 : 1일/천원)

취득가액	임 대 료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0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30
7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40
900만원 이상 ~ 1,100만원 미만	50
1,1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70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80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90
3,000만원 이상 ~	100

※ 농기계 세부기종 및 내구연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사용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구미시장		주소		
		성명		전화번호
임대차농기계				
농기계명		수량		
부속작업기		수량		
		수량		
		수량		
임대차기간				
임대료				
농기계사용계획				
기계명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ha(일 평)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사용조건 -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사용자가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보상한다.
8.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0. 본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사용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사업자 : 구 미 시 장 (인)

사용자 :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임대료 감면 신청서

기종명	형식	기대번호	작업내용	사용시간	면제사유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 11조에 의거 상기 임대 농
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구 미 시 장 귀하

※ 첨부 : 감면 증명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사용 신청대장

[illegible]

【별지 제5호서식】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

()월

일자	보유기종별현황											
	“예”트랙터()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별 누계												

* ()은 보유대수, 월별누계 = 전월누계+금월/전월누계 임.

【별지 제6호서식】

임 대 료 수 납 대 장

일련 번호	년월일	동기계임대 농가		임대기종		임대 기간	작 업 면적(평)	임대료 (원)	수 납 확인자	소계 (원)	비고
		성명	주소	기종명	수량						

* 임대차인은 임대료 수납확인필증을 반드시 각각 보관한다.

관 련 법 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농업기계화촉진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자금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농업기계화기본계획) ①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수급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검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에 대한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농업기계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시행계획)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